

#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42-2003-000088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-116 제4층 제401호

	표 제 부	】 ( 1동의 건물의 표시	)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-116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36길 6	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업무시설(오피스텔) 지하2층 286.40㎡(주차장) 지하2층 68.41㎡(기계실,창고,계단 실) 지하1층 286.40㎡(주차장) 지하1층 43.29㎡(대기실,창고,계단 실) 1층 244.98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2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3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4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4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5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4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4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4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4층 313.85㎡업무시설(오피스텔) 4층	도로명주소 2013년10월31일 등기

열람일시 : 2021년05월11일 13시09분03초 1/3

### 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-116 제4층 제401호

(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-116	대	533 m²	2003년1월9일

[	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		
1	2003년1월9일	제4층 제401호	철근콘크리트조 68.87㎡	도면편철장 제1책 12장			
	( 대지권의 표시 )		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		
1	1 소유권대지권		533분의 28.05	2003년1월2일 대지권 2003년1월9일			
2		EÓ	7	별도등가 있음 1토자(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가, 을구4번 지상권설정등가) 2003년1월9일			
3		2	П	2번 별도등기 말소 2003년1월16일			

[	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0	소유권이전	2017년9월4일 제26251호	2017년8월29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	소유자 손유진 770822-******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31, 202동 1505호 (한강로3가,용산시티파크)

##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

열 람 용

\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 \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 \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으로 표시함.

\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1년05월11일 13시09분03초

# 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 주 의 사 항 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2-2003-000088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-116 제4층 제401호

#### 1. 소유지분현황 ( 갑구 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	소	순위번호
손유진 (소유자)	770822-****	단독소유	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31, (한강로3가,용산시티파크)	202동 1505호	10

#### 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 갑구 )

- 기록사항 없음

# 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 을구 ) - 기록사항 없음

#### [참고사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출력일시 : 2021년 05월 11일 13시 09분 03초